

배포 일시	2022. 6. 20.(월)		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윤종수 (044-201-3458)
		담당자	사무관 권순길 (044-201-3460)
보도일시	2022년 6월 2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1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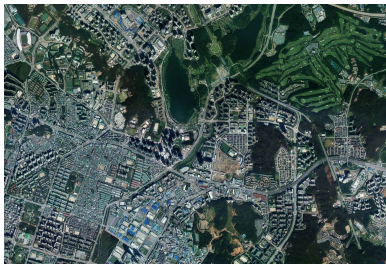
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

- 한국국토정보공사,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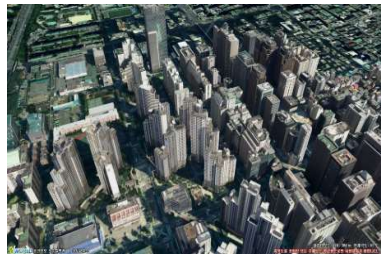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“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”으로 지정(6.15)하였으며,
 - 아울러,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*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* 「공간정보산업법」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, 「위치정보법」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
-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('22.3.17. 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
 - 신산업*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(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)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**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('21.3.16)되었고,
 - * 자율주행차량, 드론, 메타버스,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(AR·VR) 등
 - ** 3차원 공간정보, 고정밀 항공사진,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」 개정·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,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
 -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('22.3.15)된 바 있다.

□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(인력 기준*, 비밀취급인가, 전담조직)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,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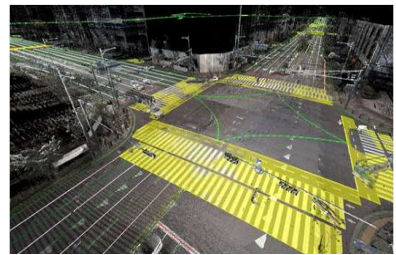
*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



<항공사진>



<3차원 공간정보>



<정밀도로지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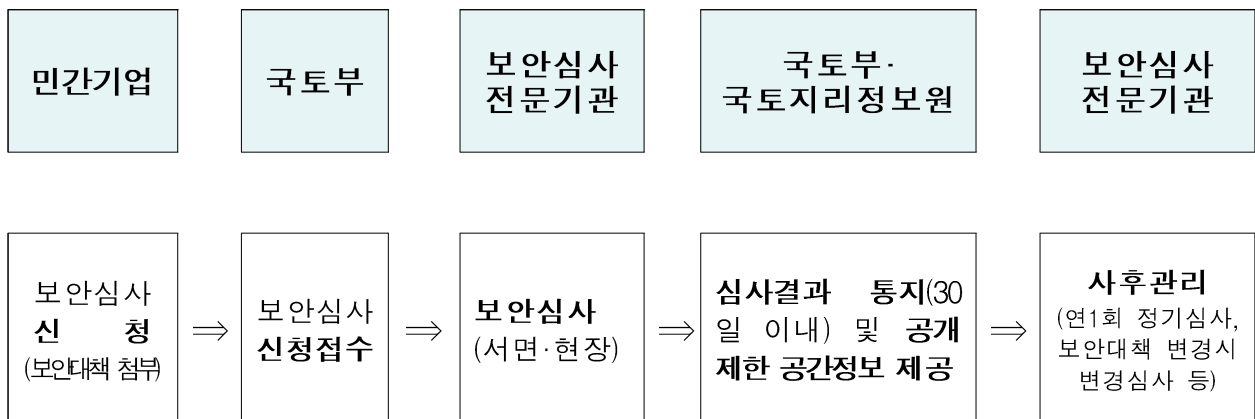
□ 앞으로,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·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,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*하게 되며,

*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(관리책임자 지정,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)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

○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, 보안심사, 심사결과 통지,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.

[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]



-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국토교통부가 구축·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

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5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15일

국토교통부 장관

1. 보안심사 전문기관

명칭	대표자 성명	주 소	전화번호
한국국토정보공사	김정렬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	063-713-0461
공간정보산업진흥원	전만경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PDC타워 C동 601호	031-606-2530

2.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

-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
 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
 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
- 「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140호)」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심사 업무

3. 지정기간 : 2022. 6. 15. ~ 별도 고시일까지

참고 2

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안내문



정부는 신산업(자율차, 드론, 가상·증강현실 등)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고정밀·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제공하는 제도를 '22.3.17.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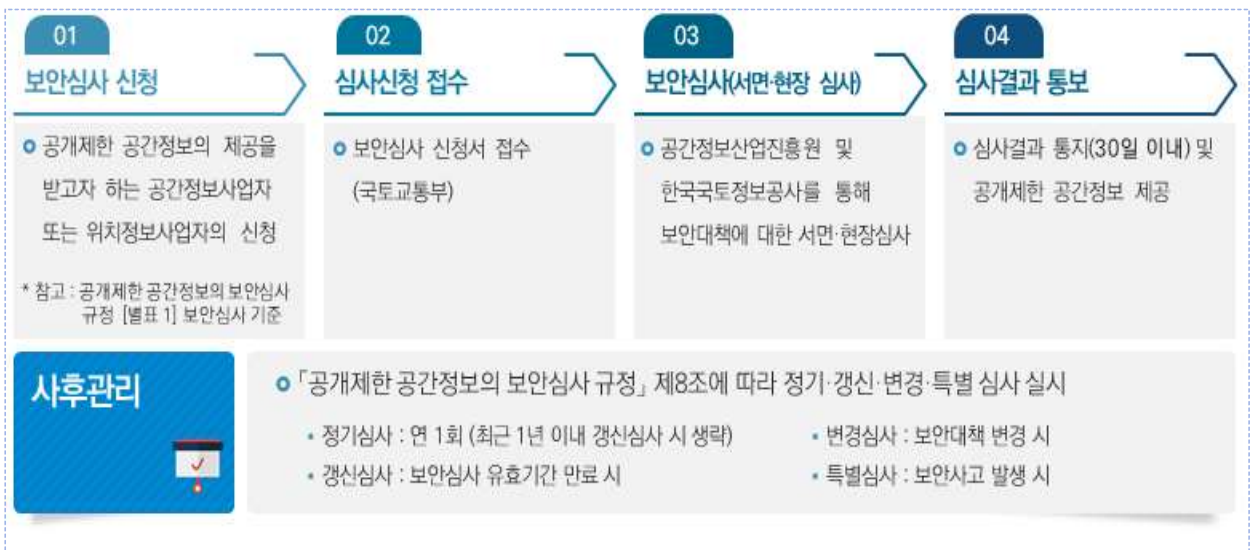
1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어떠한 절차로 제공되나요?

- 공개제한 공간정보*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* 고정밀 항공사진, 위성영상, 전자지도, 3차원 공간정보 등

- 보안심사는 신청-접수-심사-결과 통보의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며, 보안 취약점이 없는 경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.

[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]




2 어떤 정보를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-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·관리하는 고정밀 항공사진·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,
- 공간정보사업,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.

③ '보안심사' 신청 및 절차는?

① 보안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합니다.



-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안심사를 위해 '보안심사 신청서'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와 함께 신청자는 「공공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」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*(관리체계, 인적보안, 접근통제, 물리적보안 등)에 적합한 보안대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

*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
② 제3자에게 제공 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




「공공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」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수립·마련한 보안대책 (관리체계, 인적보안, 접근통제, 물리적 보안 사항)에 대해 서면·현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
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·유출·침해·분실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민간기업의 보안관리사항 이행 등의 보안수준을 심사합니다.

③ 보안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

- 심사결과는 보안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합니다.
-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, 연장 시에는 연장사유·연장기간을 통지하게 됩니다.
-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, 보안관리상 전문기관의 사후관리(정기, 갱신, 변경, 특별심사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④ '보안심사' 의 신청비용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?

- 민간기업은 보안심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, 국토교통부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	기관명	전화번호
관리기관	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	044-201-3460/3462
	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	031-210-2701
보안심사 전문기관	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단	031-606-2613
	한국국토정보공사(LX) 정보보안부	063-713-0461

참고 3
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신청서

■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신 설>

공개제한 공간정보의 (보안심사 · 갱신심사)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구분	[] 보안심사 [] 갱신심사		
신청자	상호(명칭)		
	대표자		
	사업자 등록번호		
	주소		
	전화번호		
공간정보 명칭			
활용 목적			
보안심사 · 갱신심사 신청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대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		

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5조의2 및 「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」 제5조 또는 제8조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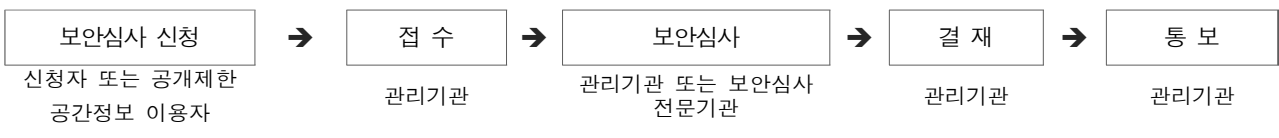
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관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